

한인 총회 회칙

<주: 본 회칙은 2018년 4월 24일 제 35차 총회에서 최종 수정 통과된 것으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C&MA 한인총회라고 부른다. (이하 “한인총회”라고 함.)

(The Korean District Conference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제2조 (소재): 한인총회는 그 본부를 감독의 거주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한인총회는 회원 교회의 발전과 확장 및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4조 (관할): 한인총회의 관할지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동부지역): 뉴욕시,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제2항 (동북부지역): 뉴저지, 뉴욕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를 제외한),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제3항 (동남부지역): 매릴랜드, 델라웨어, 워싱턴 디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제4항 (중부지역):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네브라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미주리, 알칸소, 알라바마, 테네시, 루이지애나, 텍사스, 켄터키, 인디애나,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제5항 (서부지역): 남가주지역 (베이커스필드카운티 이남),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하와이.

제6항 (서중부지역): 북가주 지역 (프레스노카운티 이북), 유타, 콜로라도.

제7항 (서북부지역): 워싱턴, 오레곤,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타나, 알래스카.

제8항 (한국지역): 한국.

제9항 (기타지역): 기타 미국 외에 한인총회의 사역이 필요한 지역.

제5조 (교회 분류): 한인총회에 소속, 혹은 관련된 교회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제1항 (조직교회: Accredited Church) 등록교인이 20명 이상이며 조직 절차를 마친 교회.

제2항 (미조직교회: Developing Church) 한인총회 소속으로 등록교인이 20명이 넘지 않거나, 조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교회

제3항 (준회원교회: Associated Church) 한인총회와 협력 관계를 맺은 교회로, 총회 준회원으로 가입했거나, 미국지방회 혹은 해외 C&MA 에 소속된 한인 교회.

제6조 (회원): 총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제1항 (정회원):

1. 총회에 가입하여 안수목사사역증(OW)을 발부받고, 총회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
2. 총회에 가입하여 Consecrated 공식사역증(COW)을 발부받고, 총회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3. 총회 소속 조직교회의 담임 전도사.
4. 총회 산하 기관의 대표 목사.
5. 총회 소속 교회의 원로목사 및 은퇴목사
6. 총회 소속으로 C&MA 본부(IM)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

제2항 (준회원):

1. 미국지방회나 해외 C&MA 한인교회의 담임목사, 준회원교회 담임목사
2. 총회로부터 안수목사사역증(OW)을 발급받고, 타교단에서, 혹은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목사
3. 정회원으로 사역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역을 중단한 자
4. 총회에 가입하여 선교사사역증을 발부받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5. 총회로부터 고시전도사 사역증(POW)을 발급받고, 총회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

제3항 (이중적): C&MA 한인총회는 실행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적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7조 (정족수): 총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총회 조직과 회의

제8조 (총회)

제1항 (구성): 총회는 아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
2. C&MA 본부에서 파송한 대표
3. 교회 파송 대의원
4. 원로목사회에서 파송한 대표 1인

제2항 (대의원 파송):

1. 조직교회는 정회원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을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있다.
2. 미조직교회는 정회원 교역자 1인을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있다.

제3항 (참관대의원):

1. 준회원교회는 참관대의원을 총회에 파송할 수 있다.
2. 대의원 외에 총회에 참석하여 등록된 정회원과 준회원은 참관대의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3. 참관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그 외 참관인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장의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4항 (개회): 총회는 교역자 대의원 과반수와 출석한 평신도 대의원으로 개회한다.

제5항 (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한다.

1. 실행위원, 감사 및 공천위원 선출
2.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심의 및 결의
3. 결산 예산 및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결의
4. 실행위원회, 상임위원회, 지역회 및 산하기관의 보고를 받고 필요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함
5.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결의

제6항 (정기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각 지역회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감독은 회의 60일 전에 각 지교회와 각 기관에 총회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교회와 산하 기관은 총회대의원 명단을 개회 1개월 전까지 총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제7항 (임시총회):

1.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감독은 실행위원회의 결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의 서명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감독의 궐위 시에는 서기가 소집한다.
2. 감독은 임시총회 30일 전에 각 교회와 기관에 임시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교회와 기관은 임시총회 대의원 명단을 개회 10일 전까지 감독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4. 임시총회에서는 통보된 안건만을 심의한다.

제9조 (감독): 감독은 총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감독은 C&MA 본부의 전임 사역자로, C&MA 헌법에 명시된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부감독) 부감독(Assistant to the DS)은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의 유고 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감독은 감독이 추천하여 총회가 인준하며, 부감독의 급여는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임원)

제1항 (서기): 서기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총회 절차를 준비하며,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항 (부서기):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의 유고시에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회계): 회계는 총회의 재정 출납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예산과 결산을 보고한다.

제4항 (부회계):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의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감사): 총회는 목사 1인과 평신도 1인의 감사를 선출한다.

제13조 (실행위원회)

제1항 (구성):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감독, 부감독, 서기, 회계.
2. 각 지역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위원. (총회에서 선출된 지역회 대표 실행위원 궐위시, 해당 지역회는 지역회 내 정회원 목사를 실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감독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은 2명의 위원.

제2항 (직무):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업무 전반의 입안과 감독
2. 총회 재정 결산과 예산안 입안
3. 상임위원회 조직 및 업무 관장
4. 총회 국장 및 직원의 인사
5. 총회의 재산 및 문서 관리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
7. C&MA 본부 및 지교회와의 관계 업무

제3항 (소집): 감독은 년 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전신 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제14조 (상임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업무를 위촉한다. 상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필요시, 또는 감독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항 (개척위원회): 개척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 산하 교회 개척 관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 (고시안수위원회): 고시 안수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목사고시와 안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역자 양성 및 회원들의 연장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4항 (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선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항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역자 및 회원 가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6항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 차원의 홍보와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7항 (회칙위원회): 회칙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회칙과 세칙을 연구 심의한다.

제8항 (후생위원회): 후생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친교와 후생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 시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직권위원): 감독은 직권상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7조 (지역회): 지역회는 총회가 분할한 지역을 관장하여 총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시행세칙 제2장에 따라 운영된다.

제18조 (영어권사역자회: English Ministries Association): 영어권 사역자회는 회원교회의 모든 영어권 사역자로 구성한다.

제19조 (국장): 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전문 분야에 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국장직의 급여와 임기는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 (유급직원): 총회에 사무 및 전문직원이 필요할 때는 감독이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유급 직원을 임명한다.

제 3 장 선거

제21조 (감독): 감독의 선출은 아래와 같이 한다.

제1항 (후보): 감독은 정회원 목사 중, 공천위원회에서 단수 공천한다. 총회석상에서 후보를 배출하고자 하면, 출석 대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후보를 추천한다. 모든 후보는 선거 30일 전까지 C&MA 본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항 (공천위원회): 감독의 임기 만료 1년 전 총회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공천위원회는 각 지역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정회원 목사 3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이 된 지역회장은 감독 선출시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공천위원회가 공천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항(선출): 감독은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유효표 중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와 2차 투표에서 소정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C&MA 본부에서 임시감독을 선정하여 차기 총회까지 시무하게 한다.

제22조 (임원 및 감사):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하여 유효표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23조 (지역회장): 지역회장은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지역회에서 선출한다.

제24조 (위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 (임기): 감독의 임기는 4년이며, 부감독, 실행위원, 상임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보선): 감독이 궐위된 때에는 National Office에서 실행위원회와 상의하여 임시 감독을 임명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감독을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감독의 임기는 C&MA 헌법에 따른다.

제 4 장 교역자

제27조 (임시당회장): 교회의 담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감독은 즉시 해당 지역회장과 당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모든 교회행정을 지휘 감독케 한다.

제28조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 시무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하는 담임목사는, 해당 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된다. 교회는 원로목사에게 담임목사 생활비의 1/2 이상을 일생 지불하며 생계를 보조하도록 한다. 추대된 원로목사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은퇴목사): 교회는 담임목사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은퇴목사로 추대한다. 교회는 은퇴목사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여 덕을 세우도록 한다. 추대된 은퇴목사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정년): 목사는 70세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의 내규가 달리 정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5 장 조직 및 가입

제31조 (교회의 조직): 총회 소속의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감독에게 등록교인 20인의 명단을 제출한다.
2. 감독의 입회 하에 조직예배를 드리고 교인총회의 서약을 받는다.
3. 감독과 교인대표들이 가입서약서에 서명한다.

제32조 (교회의 가입): 타교단 교회가 총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등록교인이 20명이 넘는 교회는 조직교회로, 20명 이하일 때는 미조직교회로 가입한다.
2. 감독의 입회 하에 가입예배를 드리고 교인총회의 서약을 받는다.
3. 감독과 교인대표들이 가입서약서에 서명한다.
4. 교회가 총회에 가입할 때는 담임교역자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담임교역자가 부재한 교회가 가입할 때는 감독의 입회 하에 교인총회에서 가입절차를 밟고 총회 시행세칙에 따라 담임목사를 파송받는다.

제33조 (교역자의 가입): 교역자가 총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해당 지역회장의 추천을 받는다.
2.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3. 감독 및 인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친다.

제 6 장 재정

제34조 (회계년도): 한인총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31일로 한다.

제35조 (상회비 및 개척선교비)

1. 모든 교회는 매년 전 회기년도의 재정 및 교세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인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매년 전년도 결산액 중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제외한 금액의 2%의 상회비 및 2%의 개척선교비를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책정된 상회비와 개척선교비는 12등분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회원은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년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출납): 모든 금전 출납 업무는 감독의 인준 하에 회계와 부회계가 담당하고, 예산에 벗어난 교역의 지출은 사전에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모금): 각 교회와 기관의 모든 대외적 모금 활동은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보험): 교회가 자체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는 건물 및 의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9조 (회계보고): 회계는 매 3개월마다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감사): 감사는 매년 정기 총회 전, 총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총회 후 교단본부가 요구하는 회계사의 검증 을 받아 교단 본부에 제출한다.

제41조 (연금): 한인총회는 교역자 후생복지를 위해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연금제도의 운용은 교역자후생업무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개정, 세칙, 부칙

제42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지역회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면 제출에 의하여 회칙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실행위원회의 발의로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43조 (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회칙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44조 (부칙)

1.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C&MA 지방회 균일헌법(Uniform Constitution for Districts of the C&MA)의 보완으로 한인총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교단의 모법과 만국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주: 본 회칙은 2018년 4월 24일 제 35차 총회에서 최종 수정 통과된 것으로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